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05.03

한국밸류 10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C5622)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주식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종목의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른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한국밸류 10년투자 100 세행복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장기적인 기본증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	---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498%	0.950%	1.650%	1.5003%	154	313	478	824	1,8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023%	0.475%	1.340%	1.0251%	105	214	328	569	1,25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 ·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율은 일정하고, 이익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 · 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단위: %)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5.04~ 2024.05.03	2022.05.04~ 2024.05.03	2021.05.04~ 2024.05.03	2019.05.04~ 2024.05.03	2018.03.29~ 2024.05.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17.62	7.40	1.57	2.29	0.69
	비교지수	10.67	1.78	-3.88	4.97	2.66
	수익률변동성	13.82	14.57	14.56	17.16	17.05

(주1) 비교지수 = [KOSPI200*90%]+[CD금리*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순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운용전문 인력	박범지	1993	책임매니저 (책임)	10	2,084.60	11.21		15.30	3.64	1년 8개월	
	김은형	1981	수석매니저 (부책임)	10	9,532	12.88	3.84			19년 3개월	
	방원석	1972	수석매니저 (부책임)	5	1,487					8년	
	박상민	1986	수석매니저 (부책임)	12	1,872	11.21				8년 5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투자하신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투자전략이나 투자목표, 투자성향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표기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을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합니다.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공시장소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vam.koreainvestmen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납입요건</td><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td></tr> <tr> <td>수령요건</td><td>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td></tr> <tr> <td>세액공제</td><td>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td></tr> <tr> <td>연금수령시 과세</td><td>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td></tr> <tr> <td>분리과세 한도</td><td>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													

			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종류 C-R, 종류 C-R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4)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과표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00 원으로 출발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매손실은 200 원이고 배당수익이 50 원, 이자수익이 50 원일 경우 기준가격은 900 원(1,000-200+50+50)이 되어 100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매손실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는 배당수익(50 원)과 이자수익(50 원)의 합계만큼 추가된 1,100 원(1,000+50+50)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 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6978.6300 / 인터넷홈페이지: va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 쪽																
효력발생 일	2024년 5월 3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 미징구(C)</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td> </tr> <tr> <td rowspan="3">판매 경로</td> <td>온라인(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온라인 슈퍼 (S-P)</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기타</td> <td>개인연금</td> <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종류 C-R, 종류 C-Re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4)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과표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00 원으로 출발한 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매손실은 200 원이고 배당수익이 50 원, 이자수익이 50 원일 경우 기준가격은 900 원(1,000-200+50+50)이 되어 100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매손실은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표기준가는 배당수익(50 원)과 이자수익(50 원)의 합계만큼 추가된 1,100 원(1,000+50+50)이 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 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6978.6300 / 인터넷홈페이지: va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10조 쪽																
효력발생 일	2024년 5월 3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3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 미징구(C)</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td> </tr> <tr> <td rowspan="3">판매 경로</td> <td>온라인(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r> <td>온라인 슈퍼 (S-P)</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기타</td> <td>개인연금</td> <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